

2013년도 ESCO투자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안내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1. 2013년도 자금지원 내용

지원대상자

-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접수일정

- 「사업별」 배정예산 소진시까지 매일 온라인 접수
 - 매월 1일부터 7일, 9시부터 18시까지 (단,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사업

- ESCO사업자 및 에너지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ESCO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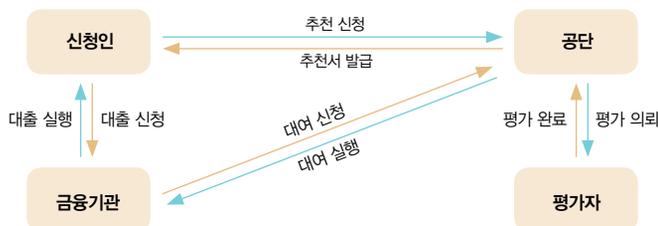
- 절약시설 개체사업
- 단열개수사업
- IT활용 에너지관리사업
- 신 · 재생에너지설비
-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설비

자금지원 조건

구분	기업구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예산(억 원)
정책자금	중소,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건물 등	300억 원 이내(동일투자지 당 150억 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고정(2.75%) 변동(1.5%)	1,200
이자보전 융자자금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과 동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고정(2.75%) 변동(1.5%)	1,000
	기타 대기업			3.2%	2,000

* 대출기간 및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을 따름

자금지원절차



* 위 지원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비평가대상 사업은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원대상 설비 적합성 검토 후 추천

2. 201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주요 개정 사항

가. 에너지절약시설 지원예산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6,325억원의 융자 지원

- 정책융자자금 : ('12) 5,298억원 → ('13) 3,325억원
- 이차보전융자자금 : ('12) 700억원 → ('13) 3,000억원

※ 정책융자예산이 '12년(5,298억원)대비 1,973억원 감소하였으나, 이차보전융자금 규모를 700억원('12년)→3,000억원('13년)으로 확대하여 전체규모는 327억원 증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조건 개선

- '13년부터 정책융자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차보전융자자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
- 대기업의 이차보전융자자금 전환 지원에 따른 지원 비율을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확대

나. 사업 관리 강화

'에너지진단결과 후속 사업'의 추천심사 제외 기간 조정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의 조기 추진 유도를 위해 추천심사 제외 기간 단축
- ('12) 5년 이내 → ('13) 3년 이내

2012년	2013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의 에너지 진단결과에 따라 진단완료 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의 에너지 진단결과에 따라 진단완료 후 3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자금 추천 취소 및 회수 사유 강화 및 추천변경 기간 설정

- 추천 취소 사유에 해당시설 및 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된 법령 위반을 신설하고,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당해연도 자금 불용 방지 및 자금 사용자 기회 확대를 위해 자금 추천변경 기간 설정
 -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자금 추천변경은 10월말까지 공단에 추천변경 신청
 - ※ 11월 이후에는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은행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 변경신청 가능

자금 지원 사업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자금사용자의 사업수행보고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 시점 및 절차등의 합리적 개선

2012년	2013년
자금사용자는 최종자금 인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자금사용자는 최종자금 인출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금융기관은 검토후 공단에 제출

- 현행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 추천 단계 또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기능 강화

다. 자금 지원 대상 설비(사업) 조정

자금지원 대상 설비 및 사업을 83개('12년) → 85개('13년)로 조정

- '12년 신규 설비 공모결과에 따른 신규 설비 추가 및 일부설비 제외
 - 신규설비 : 가스온수기, 하이브리드형 사출기, 인쇄용 건조장치
 - 제외설비 : 압축공기 제습장치

집단에너지사업 개선

- “폐열이송설비”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잉여열을 주고받은 경우’ 포함 및 “열병합발전설비”는 신·증설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원 제외

유류소비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제한장치 및 운전모니터링 시스템”에 연비효율향상 설비인 ‘에어스포일러’포함

라. 기타사항

ESCO지원 대상사업 조정

- '13년부터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중전의 “성과배분계약”)은 자금지원 대상 제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부칙(2011. 2. 28) 제2조 반영

ESCO 사업수행방식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

- ESCO사업자가 자금 조달하고 상호 성과배분하는 “성과배분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으로 명칭 변경
-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하고 ESCO가 성과보증하는 “성과보증계약”을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으로 변경
- ESCO사업자가 자금조달하고 성과보증하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으로 변경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개정(2013. 2. 7)



3. 자금지원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절약시설 자금용자

구비서류

- 계약서, 사업내역서, 특별시방서,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하자보증서,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성과배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비율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등 총 공사비의 100% 이내

자금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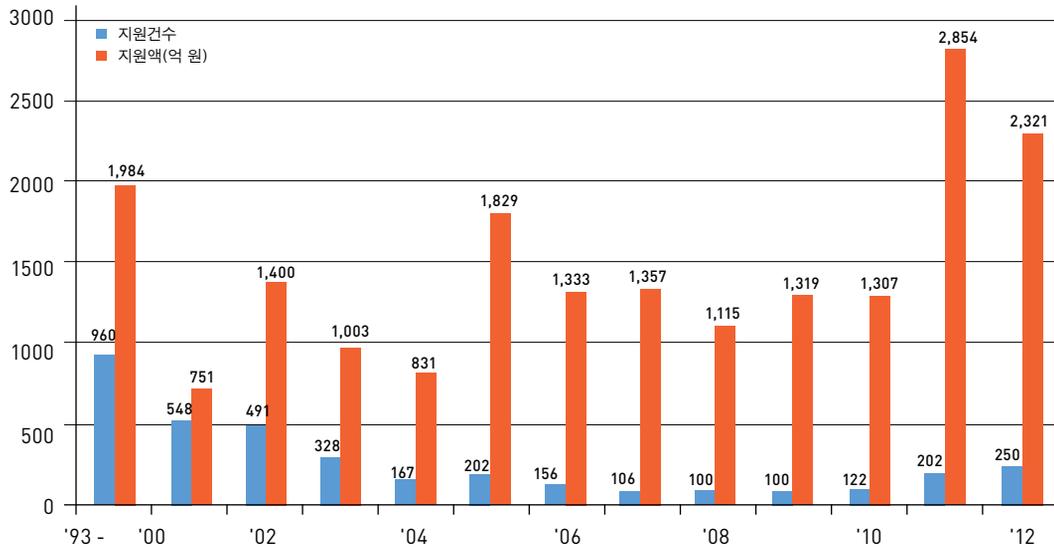
- 해당사업에 대하여 KEMCO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4. 자금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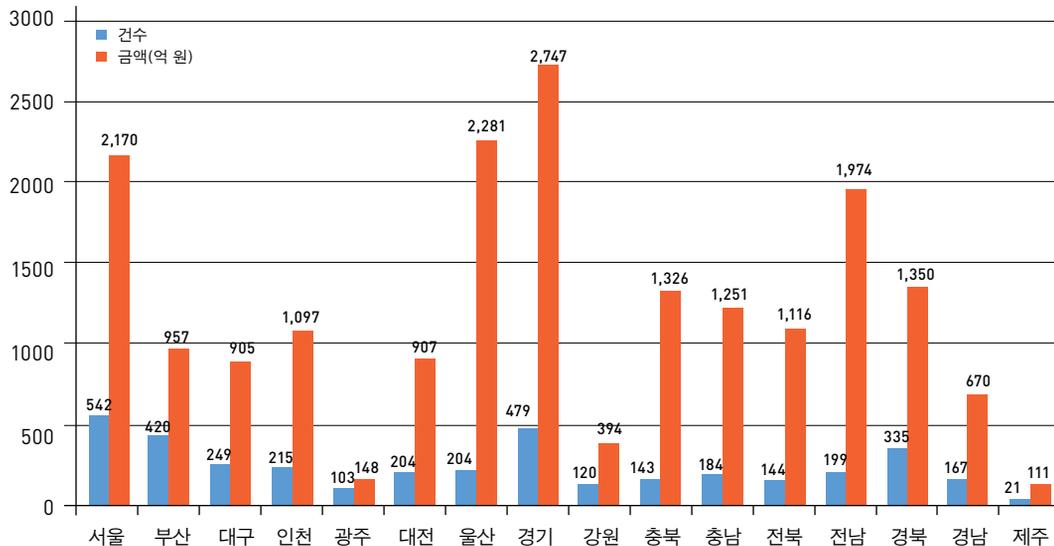
연도별 자금지원현황

- 사업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건당 지원액이 초기 5억원 미만/건 → 9~14억원/건)



지역별 자금지원현황

-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별 정책자금 용자지원 결과
⇒ 경기 > 울산 > 서울 > 전남 > 경북 ... 순



5. ESCO사업 세제지원

지원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설비의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3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설비와 상이)

신청방법

- 에너지사용자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기 타

- 정책자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제
- ESCO기업이 투자하는 ESCO사업도 세액공제 가능

